

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(제27조제4항 관련)

1.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기준

가. 시각적 경고

- 1) 시각적 경고는 운전자가 주·야간에도 알아보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경고장치들과 구별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.
- 2) 시각적 경고는 지속적이거나 점멸하는 식별표시이어야 한다.
- 3) 시각적 경고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가) 운전자좌석과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 : 별표 2의 안전띠 자동표시기 식별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나) 가) 이외의 좌석: 운전자가 운전자 좌석에 앉아 전방을 향한 상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좌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.

나. 청각적 경고

- 1) 청각적 경고는 연속적 또는 간헐적인(경고음 끊김이 1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) 음향 신호 또는 연속적인 음성 정보로 구성되어야 하며, 음성 정보를 이용할 경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2) 청각적 경고는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.

2.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작동기준

가. 1단계 경고

- 1) 원동기가 작동상태에 있고, 좌석 중 어느 하나라도 안전띠가 착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한 시각적 경고를 하여야 한다.

가) 운전자좌석과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 : 30초 이상

나) 가) 이외의 좌석 : 60초 이상

나. 2단계 경고

- 1) 시속 1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전방으로 주행 중인 상태에서 2)에 따른 작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, 다음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기 전에 30초(경고 중 멈추는 간격이 3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동시간 산정에서 제외한다) 이상의 시·청각적 경고를 발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1단계 경고가 계속 작동 중이라도 2단계 경고가 1단계 경고를 대체하여야 한다.

가) 자동차 주행거리 : 500미터

나) 자동차의 속도 : 시속 25킬로미터

다) 자동차 주행시간 : 60초

2) 2단계 경고는 좌석에 따라 다음 각목의 경우 작동하여야 한다.

가) 운전자좌석과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 : 안전띠가 착용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경우

나) 가) 이외의 좌석: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경우